

# 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3,770,319	18,413,110
일반회계	525,271,922	15,758,158
특별회계	88,498,397	2,654,952
공기업특별회계	26,142,961	784,28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734,588	532,038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408,373	252,251
기타특별회계	62,355,436	1,870,66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232,196	66,966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462,998	13,89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418,804	72,564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	320,188	9,606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1,429,420	42,88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39,000	10,170
도시개발특별회계	8,819,967	264,599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6,510	1,095
지하수관리특별회계	229,656	6,890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35,012,280	1,050,368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5,746,167	172,385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2,700,000	81,000
농어업발전기금특별회계	2,608,250	78,24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없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9,740,73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금(세), 특정목적기부금, 외부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성립전집행)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